

부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52375, 2020나52382(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철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2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6. 17. 선고 2018가단223285, 2019

가단228645(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8,556,8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006,678원을 94,563,4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 중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등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0. 11. 12.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와 F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할 시점인 2018. 8. 13.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기 전이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 또는 그 대표자인 N, 실질적 운영자 O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P,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실채무자인 소외 회사 명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F에게 지급한 6,500만원 중 3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외 회사, P 등이 소비하였으며, 피고는 2018. 11.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근저당 채권이 실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오영두, 판사 김상현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아파트 K동

[도로명주소] 부산 해운대구 L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스라브지붕 25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M호 철근콘크리트벽식조 49.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 해운대구 I 대 28900.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8900200분의 28382. 끝.

